

1. 한국운동생리학회 학회지 투고규정 개정 사항 요약
 - 일반규정 제4조 - 게재료 변경 및 급행게재료 도입
 - 일반규정 제5조 - 국문과 영문 원고 양식의 구분
 - 일반규정 제6조 - 수시접수제도 도입 및 발간일 구체적 명시
 - 일반규정 제7조 - 심사료 삭제
 - 일반규정 제10조 - 본 학회지 참고문헌 인용 의무사항 완화
 - 집필규정 [본문] #6 - 본문인용 예시 첨가
 - 집필규정 [그림] #2 - 그림 제목 및 설명 언어(영어)의 통일
 - 집필규정 [표] #2 - 표 제목 및 설명 언어(영어)의 통일
 - 집필규정 [표] #8 - 소수표기법 완화
 - 집필규정 [참고문헌] #3 - 공동저자 표기방법 변경
 - 집필규정 [참고문헌] #6 - 웹사이트 참고자료 표기 추가
 - 학회지 편집양식 - MS 워드 편집양식 추가

2. 한국운동생리학회 윤리규정 개정 사항 요약
 - #3 - 연구 대상의 보호에 관한 윤리규정 구체화 및 변경

한국운동생리학회 학회지 규정 제정

제 정	
2010. 5. 15 제7차 개정	2014. 3. 15 제8차 개정
일반 규정	일반 규정
본 학회지에 투고를 원할 때는 다음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본 학회지에 투고를 원할 때는 다음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제 1조(성격) 본 학회지는 운동과학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다.	제 1조(성격) 본 학회지는 운동과학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다.
제 2조(투고자격) 논문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제 1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주저자나 공동저자 중 1명을 교신저자로 한다.	제 2조(투고자격) 논문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제 1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주저자나 공동저자 중 1명을 교신저자로 한다.
제 3조(투고윤리)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 3조(투고윤리)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 4조(게재료)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은 10페이지 기준 100,000원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며 초과페이지당 20,000원씩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단, 그림 또는 사진의 컬러를 원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당 50,000원을 추가한다.	제 4조(게재료)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은 10페이지 기준 250,000원(단, 총설과 원문을 제외 한 현장연구의 경우, 200,000원) 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며 초과페이지당 20,000원씩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단, 그림 또는 사진의 컬러를 원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당 50,000원을 추가한다. 급행심사의 경우, 기준 게재료 이외의 급행게재료 200,000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제 5조(원고 양식) 논문 원고는 반드시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심사본(사진, 원본을 포함)을 E-mail로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완료시에는 수정된 논문과 논문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현장연구라 함은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또는 다양한 질환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논문을 의미한다(사례연구 포함).
제 6조(접수기간) 논문의 투고는 수시로 하되, 학회지 원고 마감은 2월, 5월, 8월, 11월까지이며, 마감당일(학회지 발간 3달전)까지 온라인상에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의미 불명확).	2항. 급행게재료라 함은 매호 발간일 기준 30-60일 이전에 논문을 투고하여 발간일에 게재되는 게재료를 의미한다(예: 12월 31일 발간을 목적으로, 10월 1일-11월 30일 투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 7조(심사료)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논문원고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원고 양식) 논문 원고는 국문의 경우,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영문은 MS word로 작성하여 심사본 (사진, 원본을 포함)을 <u>온라인(https://ksep.jams.or.kr/)으로 투고한다.</u> 심사 완료시에는 수정된 논문과 논문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논문의 반환)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6조(접수 및 발간) 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수시로 하되 논문의 발간 순서는 투고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상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일은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 9조(별쇄본 및 수수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 30부를 투고자에게 무료로 제공 하며, 30부 이상은 투고자가 원하는부수만큼의 별쇄본 인쇄비와 관련 경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심사료) <삭제>.
제 10조(집필요령) 논문은 별도의 집필 요령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운동과학회지 참고문헌을 5편 이상 인용해야 한다.	제 7조(논문의 반환)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8조(별쇄본 및 수수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 30부를 투고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30부 이상은

	투고자가 원하는 부수만큼의 별쇄본 인쇄비와 관련 경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집필요령) 논문은 별도의 집필 요령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학술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과학회지를 포함한 유관학회지의 참고문헌을 5편 이상 인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집필 요령	집필 요령
[체제 및 사용언어] 1.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체제는 제목, 저자, 영문 및 국문초록, 서론,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 (부록)의 順으로 기재한다.	[체제 및 사용언어] 1.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체제는 제목, 저자, 영문 및 국문초록, 서론,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 (부록)의 順으로 기재한다.
[제 목] 1.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독립된 제목을 붙인다. 2.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자일지라도 물질명의 약자 사용은 피한다.	[제 목] 1.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독립된 제목을 붙인다. 2.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자일지라도 물질명의 약자 사용은 피한다.
[저자 및 소속명] 1.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의 순서로 쓰되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hyphen)을 넣는다. 다만, 한자식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하이픈을 생략할 수 있다. 예1) Hong, Gill-Dong 예2) Jung Maria 2. 저자들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에는 저자의 오른쪽 위 반괄호 속에 번호를 표시하고, 소속기관명의 왼쪽에 같은 표시를 하여 기재한다. 예) 김철수1), 홍길동2) 1) 한국대학교 2) 한국체육과학연구원 3. 영문요약의 소속기관명에 소재지도 동시에 표시한다. 예) Dept. of Physical Education, Hankook Univ. Seoul, Korea 4. 논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를 기재한다.	[저자 및 소속명] 1.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의 순서로 쓰되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hyphen)을 넣는다. 다만, 한자식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하이픈을 생략할 수 있다. 예1) Hong, Gill-Dong 예2) Jung Maria 2. 저자들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에는 저자의 오른쪽 위 반괄호 속에 번호를 표시하고, 소속기관명의 왼쪽에 같은 표시를 하여 기재한다. 예) 김철수1), 홍길동2) 1) 한국대학교 2) 한국체육과학연구원 3. 영문요약의 소속기관명에 소재지도 동시에 표시한다. 예) Dept. of Physical Education, Hankook Univ. Seoul, Korea 4. 논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를 기재한다.
[ABSTRACT] 1. 저자명은 성, 이름 순서로 쓰되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hyphen)을 넣는다. 다만, 한자식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하이픈을 생략할 수 있다. 예) Hong, Kil-Dong 2. 초록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을 포함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그 분량은 국문초록과 유사하게 한다.	[ABSTRACT] 1. 저자명은 성, 이름 순서로 쓰되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hyphen)을 넣는다. 다만, 한자식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하이픈을 생략할 수 있다. 예) Hong, Kil-Dong 2. 초록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을 포함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그 분량은 국문초록과 유사하게 한다.

3. 줄 바꿈없이 이어서 쓰고, 번호를 붙이는 개조식 서술은 피한다. 4. 초록 하단부에 줄을 바꾸어서 5개 이내의 주요어(Key Words) 를 기재한다.	3. 줄 바꿈없이 이어서 쓰고, 번호를 붙이는 개조식 서술은 피한다. 4. 초록 하단부에 줄을 바꾸어서 5개 이내의 주요어(Key Words) 를 기재한다.
[초 록] 1.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줄 바꿈 없이 600자 이내로 쓰되 , 번호를 붙이는 개조식 서술은 피한다. 2. 요약문 끝에 줄을 바꾸어서 5개 이내의 주요어를 기재한다. 3.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첫 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구비 지원처를 명시 한다.	[초 록] 1.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줄 바꿈 없이 600자 이내로 쓰되 , 번호를 붙이는 개조식 서술은 피한다. 2. 요약문 끝에 줄을 바꾸어서 5개 이내의 주요어를 기재한다. 3.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첫 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구비 지원처를 명시 한다.
[본 문]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혼동하기 쉬운 학술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기재한다. 2. 본문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피검자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① 세부설명 3. 외국어의 인명, 지명 및 고유명사는 원어 그대로 사용한다. 4. 요약에서 정의한 약자라도 본문에서 다시 정의하여야 하며, 약자는 그것이 처음 사용된 곳에서 한번만 정의 해주어야 한다. 5. 간단한 수식은 1행으로 기재한다. 예) → a/b, (a+b)/(c+d) 6. 본문의 인용문헌 표기는 예1), 예2), 예3) 또는 예4)의 형태로 하며, 인명을 인용하는 경우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last name만을 나타낸다. 예1) 1인의 경우 : 발한량과 수분섭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이한철, 1995). 예2) 2인의 경우 : 내부에서 운동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 했다(Gilbert & Thach, 1994). 예3) 3인 이상의 경우 : 에너지섭취량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Maier et al., 1989). 예4) 여러 문헌 인용 :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Marr, 1988; 임진형 등, 1991). 7. 각주(Foot note)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단위는 원칙적으로 S.I. 단위를 사용한다.	[본 문]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혼동하기 쉬운 학술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기재한다. 2. 본문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피검자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① 세부설명 3. 외국어의 인명, 지명 및 고유명사는 원어 그대로 사용한다. 4. 요약에서 정의한 약자라도 본문에서 다시 정의하여야 하며, 약자는 그것이 처음 사용된 곳에서 한번만 정의 해주어야 한다. 5. 간단한 수식은 1행으로 기재한다. 예) → a/b, (a+b)/(c+d) 6. 본문의 인용문헌 표기는 예1), 예2), 예3), 또는 예4)의 형태로 하며, 인명을 인용하는 경우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last name만을 나타낸다. 예1) 1인의 경우 : 발한량과 수분섭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이한철, 1995). 이한철(1995)에 의하면, 발한량과 수분섭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예2) 2인의 경우 : 내부에서 운동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 했다(Gilbert & Thach, 1994). Gilbert & Thach(1994)에 의하면, 내부에서 운동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 했다. 예3) 3인 이상의 경우 : 에너지섭취량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Maier et al., 1989). Maier et al.(1989)은 에너지섭취량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예4) 여러 문헌 인용 :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Marr, 1988; 임진형 등, 1991). Marr(1988)와 임진형 등(1991)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7. 각주(Foot note)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단위는 원칙적으로 S.I. 단위를 사용한다.
[그 립] 1. 그림이나 사진은 본문 내에 삽입되되, 사진은 별지에 제출한다. 2. 그림의 제목 및 설명은 영문이면 “Fig. 1. 영문제목” 또는 국문이면 “그림 1. 국문제목”으로 그림 하단에 왼쪽 정렬하여 표기하되, 제목과 내용의 언어를 통일한다. 3. 번호는 그림, 사진을 합하여 일련 번호로 붙이고, 번호를 Fig. 1.1, Fig.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1. 표는 본문 내에 삽입하여 작성한다. 2. 표의 제목 및 설명은 영문이면 “Table 1. 영문제목” 또는 국문이면 “표 1. 국문제목”으로 표 상단에 왼쪽 정렬하여 표기하되, 제목과 내용의 언어를 통일한다. 3. 표에는 세로 줄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맨 윗줄은 굵은 실선을 사용한다. 4. 표는 한 면을 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세로로 작성하거나 표를 분리한다. 5. 표의 각주는 윗첨자인 1), a)등을 사용하여 표 밑에 왼쪽 정렬하여 나타내고, 글자 크기는 9로 한다. 6. 표의 번호는 일련번호로 붙이고,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7. 표의 단위는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8. 표 속의 숫자는 소수점 두자리까지(22.10, 156.29, 45.24±3.11 등) 표기한다. [참고문헌] 1. 반드시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문 끝에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 일문, 영문 등의 언어 순서로서 국내문헌은 가나다순, 국외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3. 공동 저자인 경우는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영문논문의 경우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글자(initial)만을 쓴다. 4. 학회지의 경우 저자명, 발표년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권수(호수), 쪽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학회지명을 약어로 쓸 경우 : 학회지 다음에 ‘.’을, full name을 쓸 경우에는 학회지 다음에 ‘.’을 기입하고 권수와 페이지	[그 립] 1. 그림이나 사진은 본문 내에 삽입되되, 사진은 별지에 제출한다. 2. 그림의 제목 및 설명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 “Fig. 1. 영문제목” 하며, 그림 하단에 왼쪽으로 정렬하여 기술한다. 3. 번호는 그림, 사진을 합하여 일련 번호로 붙이고, 번호를 Fig. 1.1, Fig.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1. 표는 본문 내에 삽입하여 작성한다. 2. 표의 제목 및 설명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 “Table 1. 영문제목” 하며, 표 상단에 왼쪽 정렬하여 기술한다. 3. 표에는 세로 줄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맨 윗줄은 굵은 실선을 사용한다. 4. 표는 한 면을 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세로로 작성하거나 표를 분리한다. 5. 표의 각주는 윗첨자인 1), a)등을 사용하여 표 밑에 왼쪽 정렬하여 나타내고, 글자 크기는 9로 한다. 6. 표의 번호는 일련번호로 붙이고,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7. 표의 단위는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8. 표 속의 숫자는 소수점 두자리까지(22.10, 156.29, 45.24±3.11 등) 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반드시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문 끝에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 일문, 영문 등의 언어 순서로서 국내문헌은 가나다순, 국외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3. 공동 저자인 경우는 5인까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6인 이상의 경우, 국문일 경우 “등” 또는 영문일 경우 “et al.” 로 기재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글자(initial)만을 쓴다. 4. 학회지의 경우 저자명, 발표년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권수(호수), 쪽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학회지명을 약어로 쓸 경우 : 학회지 다음에 ‘.’을, full name을 쓸 경우에는

사이에는 ‘.’으로 한다. 예) Med. Sci. Sport Exer., 47(4): 158-165. 5 단행본인 경우는 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 쪽 순으로 기재한다. 예) Cretzmeyer, F., Alley, L., & Tipton, C. (1974). Track and Field Athletics, 8th ed. St. Louis: C.V. Mosby. 150-153. 정명수, 이형철 (1994). 운동생리학. 2판. 서울: 한국출판사. 50-60. 전수길(편저) (1991). 운동검사와 처방. 부산: 부산출판사. 85-90.	학회지 다음에 ‘.’을 기입하고 권수와 페이지 사이는 ‘.’으로 한다. 예) Med. Sci. Sport Exer., 47(4): 158-165. 5 단행본인 경우는 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 쪽 순으로 기재한다. 예) Cretzmeyer, F., Alley, L., & Tipton, C. (1974). Track and Field Athletics, 8th ed. St. Louis: C.V. Mosby. 150-153. 정명수, 이형철 (1994). 운동생리학. 2판. 서울: 한국출판사. 50-60. 전수길(편저) (1991). 운동검사와 처방. 부산: 부산출판사. 85-90. 6. 웹사이트인 경우는 저자명, 출판일, 자료명, URL 순으로 기재한다. 예) Moore, K., Anderson, M., Soderland, L., & Brizee, A. (2013, May 5). General format. Retrieved from http://owl.english.purdue.edu/owl/resource/560/01/
---	--

한국운동생리학회 윤리규정 제정

제 정	
2008. 1. 30 제정	2014. 3. 15 제1차 개정
1. 제정 배경 운동생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운동과학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평가되는 등 그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전문학술지인 운동과학의 질적 권위를 유지·고양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연구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평가의 객관성과 엄정함을 윤리규정으로 제정하여 운동생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2. 연구진 - (공동저자의 정의)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는 논문에 공동 저자 또는 공동 발표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결정의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공동저자의 범위)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는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 1 저자, 교신저자) 연구저자 또는 발표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많이 기여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 (공동저자 불포함 사유)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하는 행위나 타인의 발표 또는 논문에 기여 없이 포함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는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 - (본인의 해명 의무)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 글) 단순한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 발표시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연구 대상의 보호 - (인간 대상 연구)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	1. 제정 배경 운동생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운동과학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평가되는 등 그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전문학술지인 운동과학의 질적 권위를 유지·고양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연구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평가의 객관성과 엄정함을 윤리규정으로 제정하여 운동생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2. 연구진 - (공동저자의 정의)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는 논문에 공동 저자 또는 공동 발표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결정의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공동저자의 범위)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는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 1 저자, 교신저자) 연구저자 또는 발표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많이 기여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 (공동저자 불포함 사유)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하는 행위나 타인의 발표 또는 논문에 기여 없이 포함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는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 - (본인의 해명 의무)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 글) 단순한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 발표시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연구 대상의 보호 - (인간 대상 연구) 연구자는 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

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동물 대상 연구)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사전 동의)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기타)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연구방법 및 자료관리 - (연구자료의 정의) 연구자료란 연구실 또는 실험실의 연구 수행 결과나 설문조사 등에 의한 통계적 처리 결과로 생성·관찰된 1차 자료와, 이들 1차 자료를 분석·처리한 2차 자료를 통칭한다. - (위조와 변조의 정의)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 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자료의 검증) 연구자료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상황의 재현을 위하여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계획부터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의 보장 및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취약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는 동의과정뿐만 아니라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넷째, 인간대상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동물 대상 연구)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비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하며,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개체수를 활용하고,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최소화한다. 동물대상 연구 역시 기관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전 동의)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기타)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연구방법 및 자료관리 - (연구자료의 정의) 연구자료란 연구실 또는 실험실의 연구 수행 결과나 설문조사 등에 의한 통계적 처리 결과로 생성·관찰된 1차 자료와, 이들 1차 자료를 분석·처리한 2차 자료를 통칭한다. - (위조와 변조의 정의)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 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자료의 검증) 연구자료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상황의 재현을 위하여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계획부터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

5. 연구 내용 및 결과발표 - (연구의 가치) 연구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 유익하고 현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연구결과물이 새로운 발견 혹은 새로운 견해이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혹은 기존 연구의 발전적 이해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연구 내용의 정확성)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연구결과의 왜곡)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 부적절행위로 판단한다. - (연구 개념의 표절)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 표절(plagiarism)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연구데이터 표절)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문장 표절) 타인이 기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따옴표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단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인용 의무 배제 사유) 기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대학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 (중복게제)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제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제로 판단될 수 있다. - (중복게제 면제 사유)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중복게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 (번역 중복게제 정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	5. 연구 내용 및 결과발표 - (연구의 가치) 연구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 유익하고 현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연구결과물이 새로운 발견 혹은 새로운 견해이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혹은 기존 연구의 발전적 이해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연구 내용의 정확성)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연구결과의 왜곡)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 부적절행위로 판단한다. - (연구 개념의 표절)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 표절(plagiarism)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연구데이터 표절)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문장 표절) 타인이 기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따옴표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단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인용 의무 배제 사유) 기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대학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 (중복게제)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제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제로 판단될 수 있다. - (중복게제 면제 사유)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중복게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 (번역 중복게제 정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
---	---

중복게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도 중복 게제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표절과 중복게제의 차이) 새로운 연구 결과의 설명을 위하여 논문의 대부분을 기발표된 연구결과와 설명에 할애할 경우 기발표된 연구결과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중복게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논문에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판정은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오류의 시정)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지하는 경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 (책임 및 처벌)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논문심사 - (심사의 공정성) 논문의 심사에 관련한 경우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연구 비밀 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제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중복게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도 중복 게제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표절과 중복게제의 차이) 새로운 연구 결과의 설명을 위하여 논문의 대부분을 기발표된 연구결과와 설명에 할애할 경우 기발표된 연구결과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중복게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논문에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판정은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오류의 시정)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지하는 경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 (책임 및 처벌)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논문심사 - (심사의 공정성) 논문의 심사에 관련한 경우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연구 비밀 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제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	--